


이 보도자료는 4.1.(화)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<p><b>검찰</b> PROSECUTION SERVICE</p>	<p align="center"><b>인천지방검찰청</b></p> <p align="center"><b>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희중</b></p> <p align="center">전화 032-961-5003/팩스 032-850-4307</p>	<p align="center"><b>보도자료</b></p> <p align="center"><b>2014. 4. 1.(화)</b></p> <p>자료문의 :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: 032-861-5010 주책임자 : 부장검사 정순신</p>
<p><b>제 목</b></p>	<p align="center"><b>『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』 등 3개 건설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</b></p>	

**개 요**

-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①인천도시 철도 2호선 건설사업, ②공촌(청라지구)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, ③ 광주·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3건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 - ① 인천도시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회합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, 배분한 공구 내에서 유찰 방지 목적으로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사실,
  - ② 공촌 하수처리시설 및 ③ 광주·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2개 건설사가 유찰 방지 목적으로 상호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사실을 각각 밝혀내고,
  - 2014. 3. 31.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업체(업체 1곳은 위 3건 모두에 연루)와 2건의 하수처리시설 입찰 담합을 주도하여 고발된 건설사 책임자 1명을 각각 불구속 구공판하였음
-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, 가격 경쟁을 피함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, 담합행위와 연계된 업체 선정 심사 비리, 비자금 조성행위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임

## I |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

### ■ 수사 경과

- '09. 10. 공정위,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
- '11. 9. 공정위, 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
- '14. 1. 29. 공정위, 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**13개 건설사 고발**
- '14. 2. 5~3. 13. 도시철도 사건 관련, 17개 업체 담당자 34명 조사
- '14. 3. 13. 공정위, 하수처리시설 담합 관련 **1개 건설사와 책임자 1명 고발**
- '14. 3. 14~3. 24. 하수처리시설 사건 관련, 3개 업체 책임자 등 9명 조사
- '14. 3. 31. 피고발 13개 회사 및 책임자 1명 각 불구속 구공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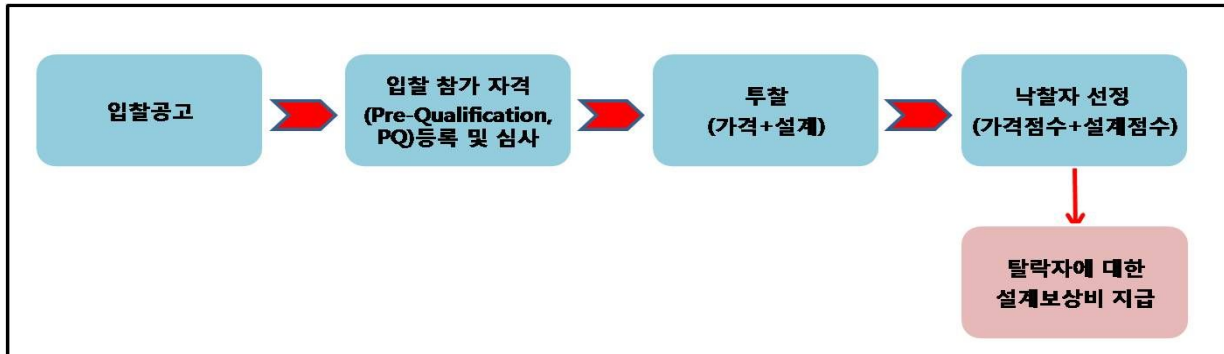
### ■ 사건 개요 <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>

-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(발주 금액 1조3,000억 원)
  - A를 비롯한 13개 건설사는 2009. 4.경 위 사업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자, 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 공동행위
-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(발주 금액 910억 원)
  - A는 2009. 4.경 입찰 과정에서 중견 건설업체 △△△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전에 낙찰자, 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 공동행위
- 광주·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(발주금액 456억 원)
  - A는 2011. 8.경 입찰 과정에서 △△△ 건설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자, 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들러리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 공동행위

**【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】**

## II 담합 구조 및 경과

### ■ 턴키(Turn-Key) 입찰 Process



- 턴키 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가 기본설계와 공사가격을 함께 제출하고, 제출된 설계 조건 및 가격 조건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점수와 설계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 결정
- 입찰 참가시 입찰서와 함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탈락시 설계비 부담이 발생하고, 발주처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 중 일정 범위 내에서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 지급
-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, 낙찰 가격도 높일 목적으로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워 담합

### 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담합 경과

#### <공구 배분 합의>

- 중대형 건설사들은 영업부서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각 건설사별 관심 공구를 사전 파악
-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2008. 12.~2009. 1.경 2~3회 걸쳐 담당자들이 회합하여 상호 공구 배분 합의
-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추진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

### <공구별 담합>

- 공구를 배분한 13개 건설사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낙찰을 받기 위하여 상호 들러리를 서주거나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움
-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(속칭 'B설계')를 제출하고, 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추어 입찰 참여
- 들러리 건설사는 설계비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게 된 설계보상비에 맞춰 설계 진행
-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서상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, 확인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기도 하였음

### ■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담합 경과

- 공촌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A는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, △△△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 받음
- 광주·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△△△은 단독 입찰로 1회 유찰되자, A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 받음
-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설계품질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들러리 건설사의 설계 초안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음

## III 수사의 성과 및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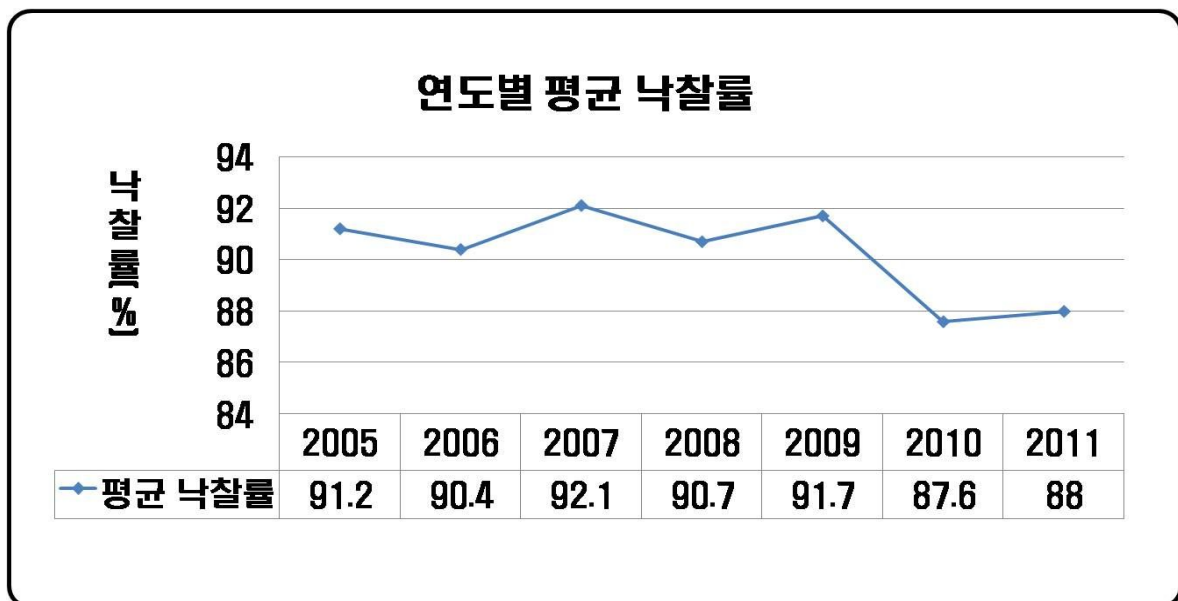
### ■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구조적 담합 실태 규명

-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시공 실적 최상위(2009년 시공능력 평가 1~31위) 업체들로서, 앞서 적발된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 사건,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담합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하여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질서 왜곡

-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,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 진행
-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건설사 - 중형건설사 순으로 차례로 공구를 배분하는 행태, 향후 다른 공사에 참여 시켜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들러리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는바, 건설업계 전반에 암묵적인 담합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방증

**■ 낙찰률을 높여 부당이득 취득 사실 확인**

- 건설사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, 낙찰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회사이익을 취하고, 이는 공적인 손실로 직결
  - ※ 낙찰률 : 발주처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(낙찰 금액/발주처 예산×100%)
-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평균 낙찰률은 97.56%, 2009년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 91.7%
  - ※ 낙찰률 차액은 약 756억 원[(97.56% - 91.7%) x 발주금액]



<출처 : 대한건설협회 2012. 11. 29. 보도자료>

■ 환부만 도려내는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

-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(2014. 4. 8. 공소시효 도래)한 상태에서 다수의 중대형 건설사들이 연루된 중요 담합 사건인 점 등을 감안
  - 고발장 접수 즉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 구성 [중요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]
-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 상대로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증거자료 확보함으로써 압수·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도 신속·철저하게 수사
  - 공정위 심사단계에서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던 13개 업체 모두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'환부만 도려내는 정제되고 절제된 수사' 원칙 견지 ☑

<별첨 1>

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행위 공소사실 요지

공구	낙찰업체	입찰자	공소사실 요지	발주금액 (백만 원)
201 공구	A	A 들러리(L)	215공구 입찰을 준비 중인 L과 상호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87,118
202 공구	B	B 들러리	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79,323
203 공구	C	C 들러리(H)	E,F,H,I,J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03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H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129,602
204 공구	D	D 들러리(G)	G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71,269
205 공구	E	E 들러리(C)	C,F,H,I,J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05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C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98,008
207 공구	F	F 들러리(I)	C,E,H,I,J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07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I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131,352
208 공구	G	G 들러리	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56,362
209 공구	H	H 들러리(F)	C,E,F,I,J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09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F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95,263
211 공구	I	I 들러리(E)	C,E,F,H,J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11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E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102,186
213 공구	J	J 들러리	C,E,F,H,I,K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13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인천지역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75,837
214 공구	K	K 들러리(D)	C,E,F,H,I,J 건설사와 공구 배분 합의에 따라 214공구를 낙찰받기로 하고, D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89,854
215 공구	L	L 들러리(A)	201공구 입찰을 준비 중인 A와 상호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51,035
216 공구	M	M 들러리	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공동 부당행위	39,347

<별첨 2>

하수처리시설 담합 행위 공소사실 요지

공사명	낙찰업체	입찰자	공소사실 요지	발주금액 (백만 원)
공촌 하수처리시설	A	A ..... 들러리 (△△△)	A는 △△△을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 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 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91,000
광주·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	△△△	△△△ ..... 들러리(A)	△△△는 A를 들러리로 구한 다음, 사전 에 낙찰자, 투찰가격을 정하여 함께 입 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	45,607